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24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19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5일, 아이수루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다. 상정일자 :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6월 19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아이수루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민간정원 확대 및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, 이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정원진흥실시계획에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교류,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)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 및 국제교류,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)
- 2) 민간정원의 개방에 있어 정원 대상 등록 및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민간정원 확대 노력에 맞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정원진흥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)에 민간 정원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·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7조는 ‘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’을 규정¹⁾하는 것으로 제1항은 ‘정원진흥기본계획’에 따라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7조제2항제5호(민간정원 활성화)와 제6호(정원문화산업 국제 교류·협력)는 「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(68개) 중에 하나로, 제1호(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)와 제3호(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)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의 내용이므로 조례 체계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조례 제10조는 민간정원 개방²⁾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제1항은

1) 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정원 조성 현황
3.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
4.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·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

2) 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장이 서울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, 제2항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임.

안 제10조제2항(신설)은 ‘시장이 민간정원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’라고 규정하는 것이나, 전문가 자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재 서울시는 등록된 민간정원이 없는 관계로 이를 위한 법령 개선 건의³⁾ 중에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을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3) 2025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(제331회 정례회, 2025.6.19.)

- 건의기관(행정안전부): 서울시 민간정원은 0개소로, 법적 제한 등으로 공간 확보 어려움이 있어, 도시자연공원구역,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정원 및 부대시설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요지 :

-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세부추진에 관한 하위 범주 및 후속계획에 관한 사항과 별도 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, 제안 이유인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‘민간정원의 개방’ 조항에 포함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2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세부추진에 관한 하위 범주 및 후속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, 전문가 자문 규정은 별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.
- 제안 이유인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‘민간정원의 개방’ 조항에 포함함.

2. 주요 골자

-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포함하는 사항 삭제(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)
- 민간정원 등록·운영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사항 삭제(안 제10조제2항)
- “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”을 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에 포함
(안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-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<u>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<u>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</u></p>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② <u>시장은 등록을 희망하는 민간정원의 등록과 등록된 민간정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 음)</p>	<p><u>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	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 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 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 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제2항제4호(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) 및 제5호(정원문화사업 관련 국제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)와 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	정원도시 대외협력 및 경진대회(붙임1)	72,925
제10조	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 추진(붙임2)	2,648,2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5년 서울시 정원도시 대외협력 및 경진대회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1.~12.
- 지원대상 : 자치구 및 시민
- 사업수행주체 : 자치구 및 공원여가센터
- 추진방법 : 공모를 통한 시상자 선정, 업무협약 체결 등
- 사업의 주요내용 : 민간/공공 대외협력 및 정원도시 우수사례 시상 등 콘테스트 개최

[붙임 2] 2025년 서울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 추진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추진방향 :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 기획·운영
- 사업내용 : 정원을 여가를 즐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
 - 생애주기별, 대상별 특성에 맞춘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
 -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정원문화힐링센터 운영
 - 각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
 - 매력정원의 스토리를 활용한 정원투어프로그램 등 운영
- 추진방법 : 용역 추진 또는 직접 시행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 등 10,000,000원	= 10,000천원
	○ 정원문화 힐링센터 시범운영 100,000,000원	= 100,000천원
	○ 행사차출 경비 1,200,000원	= 1,200천원
	○ 공원의 사진사 운영 35,000,000원	= 35,000천원
행사운영비	○ 정원문화 확산 가드닝 프로그램	= 260,000천원
	- 청년 가드닝 100,000,000원	= 100,000천원
	- 어르신 가드닝 50,000,000원	= 50,000천원
	- 직장인 가드닝 50,000,000원	= 50,000천원
	- 어린이·청소년 가드닝 60,000,000원	= 60,000천원
	○ 예술품은 매력정원 운영 250,000,000원	= 250,000천원
	○ 공원별 특화 프로그램 90,000,000원	= 90,000천원
	○ 매력정원스토리 발굴·확산 50,000,000원	= 50,000천원
○ 테마가 있는 정원여행 40,000,000원	= 40,000천원	
○ 지역문화 특화 프로그램 150,000,000	= 150,000천원	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	
시설비	○ 노원정원지원센터 환경개선 1,000,000,000 ○ 동대문구 정원문화힐링센터 조성 600,000,000	=	1,000,000천원 600,0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 추진 10,000,000원	=	10,000천원
기타보상금	○ 매력정원스토리 공모전 2,000,000원	=	2,000천원
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	○ 언론 홍보 50,000,000원	=	50,000천원